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표자 회의

2019년 5월 23일



대한핸드볼협회
KOREA HANDBALL FEDERATION

대회 규정

대회규정

1. 대회명 :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 대회기간 및 장소

- 2019. 5. 24 ~ 5. 28(5일간) /전라북도 정읍시(정읍국민체육센터, 신태인실내체육관)

3. 참가자격 : 2019년도 등록을 필 한 선수

4. 참가신청 : 임원 4명 이내, 선수 15명 이내

5. 매 경기 참가신청서에 등재된 15명의 선수가 출전할 수 있으며,
최소 2명의 임원이 반드시 출전해야 한다.

6. 경기규칙 : 현행 국제핸드볼연맹 규칙에 의해서 운영된다.

7. 심판은 대한핸드볼협회 공인심판으로 운영된다.

8. 경기용 볼은 대한핸드볼협회 대회사용구를 사용한다.

9. 경기시간

- 초등부 : 전후반 각 20분(휴식시간 10분)
- 중등부 : 전후반 각 25분(휴식시간 10분)

10. 경기방식

- 토너먼트

11. 경기 중 부상선수에 따른 응급조치는 주최 측에서 처리하나 그 이후 사항은 팀에서 처리한다.

12. 질서대책위원회 운영

- 대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서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팀 임원 및 선수의 질서문란 행위는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운영세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13. 소청 관련 규정

- 경기 종료 한시간 내에 소청(300,000원)
 - 소청에 대한 사유를 다음날 오전9시까지 서면으로 작성하여 질서대책위원회에 제출(증빙자료포함)
 - 질서대책위원회는 24시간 이내까지 소청을 결정하여야 하며, 선수나 팀의 실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 또한 벌금 또는 징계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14. 팀 타임아웃

• 팀 타임아웃 시행 방법 변경에 따른 안내

-동 대회에서 팀 타임아웃은 팀 임원이 경기 기록석의 부저를 직접 누르는 방식으로 진행

-팀 타임아웃의 신청 횟수, 팀 타임아웃에 대한 규정 (명백하게 볼을 소유하였을 경우, 요청 가능하다는 점) 에는 변함이 없음.

※ 상대팀이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 타임아웃 부저를 누를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적용함.

• ① 상대팀 공격 시 부저를 누를 경우

- 타임아웃 버튼을 누른 임원 가중처벌
- 상대팀에 7m 부여
- 해당 팀의 타임아웃 요청 1회 차감

• ② 상대팀의 완벽한 득점 찬스에서 부저를 누를 경우

- 부저를 누른 임원 블루카드(실격 후 보고서)
- 상대팀에 7m 부여
- 해당 팀 타임아웃 1회 차감

• ③ 공격권을 잃는 순간 의도적이지 않게 부저를 누른 경우

- 책임임원(A) 가중처벌
- 상황에 따라 상대팀에 프리드로우 또는 7m 부여
- 해당 팀의 타임아웃 요청 횟수 1회 차감

※ 고의성 여부는 해당경기 기술임원이 판단 한다.

15. 언더웨어 규정

- 토시 : 유니폼 바탕색상과 동일한 색상 허용
- 언더웨어
 - 1) 언더웨어는 유니폼 바탕색상과 동일한 색상만 허용
 - 2) 유니폼 색상과 동일하지 않은 색상은 착용 불가

※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1114번)



<허용됨>



<허용 되지 않음>



공지사항

1. 시·도협회 벤치착석 관련

- 기존 규정 : 시도협회 전무이사만 벤치착석 가능
- 변경내용 : 시도협회 전무이사 또는 사무국장 1인 착석 가능
- 최초 벤치에 착석한 임원(선수)는 임의로 벤치를 벗어날 수 없음

2. 유니폼 색상

- 상대팀 유니폼 색상과 임원복 색상이 동일할 시 임원 조끼 착용 의무

3. 유니폼 색상통보

- 경기종료 후 상위라운드 진출팀은 경기 종료 후 경기부에 유니폼 색상 통보

4. 참가선수명단 확인

- 경기시작 전 기술임원에게 참가인원 명단 및 등번호 확인

* 명단은 변경 불가하며, 등번호 변경은 팀 최초 경기 시 1회만 변경 가능

공지사항

5.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제31조제3항 관련)

5-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5-2. 개인기준

징계 대상	위반행위	징계기준
1. 심판 및 임원(주최자)	가.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자격정지 1년 이하
	다.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자격정지 1년 이상

공지사항

2. 지도자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부정선수를 출전 지시	자격정지 3년 이상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사람(교사)	자격정지 1년 이상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사. 시설 및 기물 파괴	출전정지 6개월 이상 (손해배상병과)
아.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자격정지 1년 이상	

공지사항

3. 선수	가. 심판 판정 불복 폭언	출전정지 6개월 이상
	나. 심판에 대한 폭행	출전정지 2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출전정지 1년 이상
	라. 선수상호간 폭행	
	○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마. 시설 및 기물 파괴	출전정지 3개월 이상 (손해배상병과)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출전정지 1년 이상

공지사항

4. 기타 임원 (참가자)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사람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주동자	무기한 자격정지
	○ 가담자	자격정지 5년 이상
	마. 시설 및 기물 파괴	자격정지 1년 이상(손해배상병과)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출전정지 6개월 이하
5. 단체(팀)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나. 경기장 폭행 난동	출전정지 3년 이상